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0 선고 2021나1911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모두의 법률

담당변호사 배근조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매헌

담당변호사 박승헌

변 론 종 결 2021. 10. 20.

판 결 선 고 2021. 11. 10.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26. 선고 2020가단5109932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 ① 피고와 C 사이의 제1심판결 첨부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2020. 2. 25.자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②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36521 대여금 사건 판결의

승계집행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중 ① 부분과 같다(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해 위 ①의 채권양도계약 취소 부분에 관해서만 원고가 항소하였으므로, 위 ②의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는 아무런 항소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고(다만 G이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의 승소를 돕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여 주장·입증할 것이라는 취지로만 주장하고 있는데, G의 보조참가신청은 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되어 2021. 11. 5. 불허가 결정을 하였다)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까지 종합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변론종결 이후 변경된 사실관계 등을 반영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인정사실 중 마.항의 표 앞부분까지(4쪽 5줄부터 11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마. 전부금 소송의 경과

원고는 2020. 3. 2. C을 상대로 이 사건 전부명령에 기한 전부금 2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가합100986), “이 사건 금원은 C의 자금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이 원고에게 투자한 돈인데 원고는 G을 통하여 투자자들에게 돈을 송금함으로써 이를 모두 변제하였다. 그럼에도 C은 제1 관련판결을 통하여 이 사건 금원을 이중으로

변제받았으므로 G은 C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은 2020. 10. 7. “제3채무자에게 전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집행채권자로서는 피압류채권의 존재를 입증해야 하는데,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C이 제1 관련판결로 인해 이중으로 변제받는 부당이득을 얻었다거나 G에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인정사실 중 마.항의 표가 끝나는 뒷부분(5쪽 11줄)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해 원고가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인천) 2020나14527] 2021. 10. 1. 항소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 제1심판결 이유 제1항【인정근거】부분(5쪽 12줄)의 “을 제14호증”을 『을 제14, 15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이유 제2항 원고의 주장 요지 부분의 “취소되어야 한다.” 뒷부분(5쪽 20줄)에 『원고는 이 사건 전부명령의 피전부채권(G의 C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또는 구상금채권)을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채권양도계약의 취소를 구한다.』를 추가하고, 그 이하의 “또한 ~ 불허되어야 한다.” 부분(5쪽 21줄부터 23줄까지)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이유 제3항 판단 부분(5쪽 마지막 줄부터 6쪽 16줄까지)을 아래와 같이 내용을 추가, 삭제하여 고쳐 쓴다.

『 3.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전부명령에 의해 원고에게 이전된 피전부채권인 G의 C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또는 구상금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C에 대하여 위 전부명령에 기한 전부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한 피전부채권인 ‘C이 제1 관련판결을 통해 이 사건 금원을 이중으로 변제받음으로써 G이 C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채권 또는 손해배상채권을 가지는 사실’ 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제2 관련판결)이 선고되고 항소기각되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민사재판에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46338, 46345 판결 등 참조),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 중 전소가 후소의 요건사실 중 하나를 소송물로 하여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나, 당사자가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제2 관련판결은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가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요건사실 중 하나인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 전부금의 존부가 다투어진 사건으로 그 소송에서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이 사건 소송의 선결문제가 되는 경우이므로 위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 사건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고, 달리 위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주장 및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확정된 제2 관련판결의 판단을 뒤집고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는 나머지 요건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규연, 판사 최태영, 판사 심재남